

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2일 강태원 의원 외 6인(강태원, 연만흠, 박재국, 이필용, 김환동, 조영재, 이종호 의원)이 제안하여 7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가. 법제처는 법령 제명 붙여쓰기는 국민의 언어생활 현실과의 괴리 및 어문규범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2005.1.1부터 「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는 이를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- 나. 우리도의 경우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혼용되고 있어 도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제처의 「법령 띄어쓰기 기준」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부서별로 추진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일괄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명칭은 「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되, 법제처의 「법령입안심사기준」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2조).
 -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사용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명을 별표와 같이 일괄하여 개정.

- 나.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(자치법규 포함)의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(「 」)를 사용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한 것으로 하여 입법의 경제성·효율성 및 통일성을 확보함(부칙 제2항).

4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「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」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,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(「 」)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법령 제명 붙여쓰기 관행은 일제강점시기에 일본법을 우리나라에 강제 적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본식 표기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, 법제처에서는 이를 어문규범에 맞게 「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」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도 조례 제정 또는 개정시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에 낫표 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없이 법제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, 부서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.

붙임 1 조례제명 띄어쓰기 기준

2.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

<불임 1>

조례제명 띄어쓰기 기준

1. 기본원칙

- 가. 「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(문화관광부 고시 제88-1호, 1988.1.19)」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되, 법제처가 마련한 「법령입안 심사기준」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. 구체적인 띄어쓰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2. 조례제명 띄어쓰기 기준

- 가. 조례의 제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한다. 현행 띄어쓰기에 관한 어문규범은 「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(문화관광부 고시 제88-1호, 1988.1.19)」이므로 이에 따라, 조례 제명에 포함된 조사 뒤, 어미 뒤, 부사 앞뒤, 의존명사 앞에서 띄어쓰기로 표기한다.
- 나. 조사, 어미, 부사, 의존명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조례명의 경우, 통상 일반인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알려져 있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.
- 다.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례명이라도 그 조례가 조직 또는 단체(공사, 조합, 위원회 등) 및 기금 등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,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쓰도록 한다.
- 라. 조례명을 조례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, 조례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조례명 앞뒤에 낫표(')를 사용한다.